

【 8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09. 03.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중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개발 행위시 문제점이 발생되어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안 제18조제1항제2호)

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등을 추가함.
(안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 (안 별표 4)

라. 상업지역내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를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별표7 ~ 별표 10)

마.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인 종교시설을 반영함.(안 별표 16)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1 제1호”를 “별표1의2”로하고
 같은조 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지형도상
 표준단위면적(100m×100m)”를 “신청토지”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한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의2,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공동위원회 구성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의3(공동위원회 운영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 내지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다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거나 칼라발급 사항이 아닌 경우(단, FAX 민원으로 신청되어 발급되는 사항은 제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광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나목의 경우 30m이상, 다목의 경우 15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목와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4호 관련)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란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나목의 경우 30m이상, 다목의 경우 15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조례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나목의 시설은 너비 30미터이상, 다목의 시설은 너비 15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질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삭제 <2008.2.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10호의(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 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은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 농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농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주거 외 용도와 복합된 것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70%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은 제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 농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농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가 건축 연면적의 70%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종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각목(해당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 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종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자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종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9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암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자연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8 제9호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삭제 <2008.1.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옥·바옥·사옥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2호 관련)

(4종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친화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2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0 제1호 차목 및 제2호 카목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별표 19, 별표 23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관련)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충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있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잴 거리를 말한다.
- 3)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단독, 공동주택포함)의 총 세대수가 10호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별표 25]

중심 · 일반 · 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52조 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상 ~ 70 미만	6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650% 이하	700% 이하	4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700% 이하	800% 이하	5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750% 이하	900% 이하	55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도시계획 조례</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u>별표1 제1호</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생략</p> <p> 가. 생략</p> <p>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 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임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는 <u>지형도상 표준단위면적(100m×100m)</u>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도시계획 조례</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u>별표1의2</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 가.(현행과 같음)</p> <p> 나. <삭제></p> <p>2. ----- ----- -----경사도는 신청토지 내의----- -----</p>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공동위원회 운영등)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59조 내지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p>제69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 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p>제69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위원회 구성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중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p>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양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p>
<신설>	<p>제69조의3(공동위원회 운영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내지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p>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다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거나 칼라발급 사항이 아닌 경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p>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다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거나 칼라발급 사항이 아닌 경우 (단, FAX 민원으로 신청되어 발급되는 사항을 제외)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1.19, 2008.2.2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④, ⑤, ⑥, ⑦ (생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12.31, 타법개정]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 ③, ④, ⑤, ⑥ (생략)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2008.07.04. 조례 제3765호

제2조 (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0.27>

[별 표1]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규
도시 정책과	51	·도축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39조
	52	·종합의료시설	위와 같다
	53	·하수도	위와 같다
	54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 제외)	위와 같다
	55	·수질오염방지시설(광역시설 제외)	위와 같다
	56	·폐차장	위와 같다
	57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	위와 같다
	58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위와 같다
	5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서류의 공람공고 및 고시	위와 같다
	6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위와 같다
	6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효력 상설의 고시	위와 같다
	62	o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자연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단,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3조, 제139조
	63	·기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에 관한 권한	위와 같다
	6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실효 등	위와 같다
	65	o 종전의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자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08.2.22>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08.2.2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8.2.2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08.2.2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삭제 <2008.2.22>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08.12.3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